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연구윤리규정

2023. 03. 23. 제정
2024. 10. 21.
2026. 04. 04.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이하 '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 ① 본 규정은 학회의 회원 및 '핵의학기술' (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자(이하 통칭하여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②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그 밖에 학술지의 심사·편집·출판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그 직무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한다.

제 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장 연구자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 4조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행위는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연구정보의 기록·보존·보고 및 공개 의무)

- ①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6조 (연구자의 역할)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재정적·비재정적 이해관계 및 활동을 명시
8.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9.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 참여
10. 연구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제 7조 (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 평판을 높이거나 연구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서는 안 된다.

제 8조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9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연구자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 10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11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 ① 모든 저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저자 자격, 저자 순서 및 소속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논문의 내용과 연구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 ② 각 저자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고, 논문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 경우 그 조사와 해결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저자는 연구결과의 오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의 최신 「헬싱키선언」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와 연구대상자의 사전동의 취득 여부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 여부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12조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에 제시된 데이터, 저자 표시,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저자의 해당 논문 관련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 순서와 공동저자 포함이 각 저자의 기여 및 저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졌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책임을 진다.

제 13조 (저자결정 기준)

- ① 저자 자격은 「핵의학기술」 투고규정의 저자 기준에 따르며, 저자로 표시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착상 또는 설계, 자료의 수집·분석 또는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2.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자
 3. 게재될 최종 원고를 승인한 자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가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책임을 지는 데 동의한 자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사항은 사사표기에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공동저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자 표시는 부적절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1. 유령저자 : 연구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연구성과 발표 시 저자에서 제외된 경우
2. 선물저자 : 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등재하는 경우
3. 교환저자 :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성과에 상대방을 저자로 포함하여 업적을 부풀린 경우
4. 도용저자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분야 유명 연구자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④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도구는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도구가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활용 내용을 연구방법과 사사표기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14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 15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과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4장 연구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16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 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하거나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③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이나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조사과정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17조 (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표시와 참고문헌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저자는 저자명, 학술지의 권·호, 페이지, 출간연도 등 인용의 모든 요소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인용된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학술자료를 논문심사, 연구 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

야 한다.

-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의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에서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와 해당 출처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를 독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저자는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개 문헌을 참고문헌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반 지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⑧ 저자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초록만 사용하고도 참고문헌에는 학술지 논문 전체를 인용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수록된 초기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면서 최종 출간본을 인용한 것처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 ⑨ 저자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경우, 자신의 저작물에 명확히 밝히고 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8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타인이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식이거나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용 표시를 하도록 한다.

제 19조 (아이디어 표절)

- ① “아이디어 표절”이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을 포함한다)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20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1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란 타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삽입하거나 동의어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22조 (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중에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관점의 문장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접하기 어려운 다른 독자층을 위하여 중복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 편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저자는 동일한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 결정이 내려진 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3조 (저작권 침해 방지)

-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보유하며, 해당 논문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4.0 국제 라이선스(CC BY 4.0)를 적용한다.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와 출처를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논문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고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인용하거나 번안하는 경우에는 인용 표시를 하거나 문장을 바꾸어 작성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 24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이용하는 행위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심사를 부탁하는 행위
4.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5. 비밀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인공지능 도구에 심사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나 심사 관련 비공개 자료를 입력하는 행위
6.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고도 「논문심사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한 도구, 목적·범위 및 활용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명확히 보고하지 않는 행위

제 25조 (그 밖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연구업적이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3.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행위

제 26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출처를 부적절하게 인용하는 행위
2. 참고문헌을 왜곡하는 행위
3. 출간된 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만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을 인용하는 행위
5. 하나의 출처에서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
6. 자신의 기존 텍스트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재활용하는 행위
7. 연구업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하여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행위
8. 인공지능 도구의 활용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제 27조 (참고문헌의 왜곡 금지)

- ① 참고문헌에는 논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문헌만 포함하여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이 불분명한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데이터나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상충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28조 (젠더혁신정책)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s://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저자는 연구내용에서 성별 기술 즉,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야 하고, 단일 성(性)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반드시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 5장 이해상충

제 29조 (이해상충 관리)

① “이해상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2. 인간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개인적 친분, 소속기관의 영향, 개인적 갈등 또는 연구경쟁 등 사적 인간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3. 지적 이해상충: 특정 연구의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 세계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4. 역할 충돌에 따른 이해상충: 교육·봉사·외부활동 등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경우

② 연구의 제안·수행·보고 또는 심사·편집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자,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해당 이해관계를 학회 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학회 또는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논문·보고서 또는 심사·편집 기록에 이해관계 표시
2.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해당 연구·심사·편집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회피 또는 배제
3.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검토 또는 감독
4.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교체 또는 해당 절차의 중단

제 30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란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포함하고도 그 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해당 논문을 이용하여 입사·진학, 채용·승진 등 공적 또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는 연구결과와 논문작성에 대한 해당 특수관계인의 실질적 기여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문 투고 시 제출하는 ‘저자 점검사항’과 ‘게재제출문’의 저자정보란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6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제 31조 (설치)

학회와 학술지의 연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 및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점검·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조사의 착수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 (이하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회 통합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 34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계획·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중요한 의결사항을 학회 통합회장에게 보고한다.
- ③ 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편집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 35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연구윤리 위반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건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②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 3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의결권 있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37조 (관계자 출석)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38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제보자와 참고인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반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1. 경고
 2. 투고 중인 논문의 접수 취소
 3. 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학술지 게재 목록과 해당 논문에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철회 사실 표시
 4. 3년간 학술지 논문 투고 제한
 5. 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공지
 6.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내용 통보
- ⑤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사실 외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유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 7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39조 (연구진실성 검증 및 소명 책임)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인지되거나 제보된 경우 해당 연구자는 해당 연구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책임이 있다.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출판 후 논문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진실성 검증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0조 (연구진실성 검증 원칙)

- ① 위원장이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검증자료 제출을 해당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연구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위원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출자료, 의견 및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1조 (부정행위 등의 제보·접수)

-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과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1. 피조사자 또는 대상 저작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반복 또는 장기화할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던 여러 연구부정행위 중 일부를 제보한 후 나머지를 다시 제보한 경우

제 42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도 논문명, 연구과제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학회 통합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신분, 학회 회원 자격 또는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공개된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진행되는 절차와 일정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43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이나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조사과정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조사절차와 일정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8장 출판 후 관리

제 44조 (출판 후 논의 및 수정)

-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표·그림·문구·저자명 등의 오류나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논문을 수정할 수 있다. 표절, 데이터 위조·변조, 중복게재, 저작권 침해, 특수관계인 공동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출판윤리 위반이 확인되거나 오류로 인하여 논문의 결과와 결론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게재된 논문에서 오류나 과오가 확인된 경우 수정기사, 철회기사, 편집인의 우려 표명 또는 공지문 등의 방법으로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또는 철회 대상 논문의 전체 서지정보, 오류나 과오에 대한 설명, 수정내용, 오류 발견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공지와 감사, 관련 기사 및 원 논문의 인용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표절, 데이터 위조·변조, 중복게재, 저작권 침해 또는 특수관계인 관련 부정행위 등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최종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논문의 철회, 철회 사실의 표시·공지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철회 또는 우려 표명이 필요한 경우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관련 지침과 흐름도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Flowcharts>)에 따라 처리한다. 논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수정 및 버전 관리 권고사항 (<https://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corrections-and-version-control.html>)에 따라 처리한다.

제 45조 (출판 후 불만 및 항의 처리)

학회는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학술지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판 후 불만과 항의를 처리한다.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COPE의 불만 및 항의 처리 지침 (<https://publicationethics.org/appeals>)에 따른다.

1. 논문 제출자, 저자, 심사위원 및 독자는 부적절한 경쟁행위, 저작권 문제, 데이터 도용, 명예훼손, 편집·심사 절차 또는 법적 문제 등에 관하여 불만이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이나 항의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편집·심사 절차에 관한 불만과 항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출판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은 제6장 및 제7장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불만 또는 항의의 대상이 편집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편집위원 또는 연구윤리위원이 처리를 담당한다.
3. 처리결과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결정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한 위원회 또는 처리 담당자는 그 결과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른다.